

도 보

전라남도

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제 2019-63호

2019년 12월 30일 (월)

발행 : 전라남도 / 편집 : 대변인실
홈페이지 www.jeonnam.go.kr



목 차

◆ 고 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9-485호 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9-485호

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여수시 만흥동 일원에 지정·고시된 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2. 30.

전라남도지사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: 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일원
 - 면 적 : 221,763㎡
3.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
 - 사업시행자(여수시)의 요청에 의함
 - ※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
4. 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역
 - 가. 도시개발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	여수 만흥동 일원	221,763	감)221,763	-	

나. 도시개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	도시개발구역 해제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해제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 - 여수 만흥지구 도시개발구역 221,763㎡ 해제
 - 여수 만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21,763㎡ 해제
6. 관련도면
 -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7. 관계도서 열람방법

- 열람방법 :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여수시청 공영개발과(061-659-4578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